

18세기 후반 濟州地域 公奴婢의 存在樣態*

—대정현 東城·中文·自丹·今勿路里
호적중초의 사례분석—

**김 동 전

1. 머리말
2. 18세기 후반 濟州 大靜縣의 身分構成
3. 제주 지역 公奴婢의 身貢과 그 變化
4. 제주 지역 公奴婢의 社會的 地位
5. 제주 지역 公奴婢의 免賤從良
6. 맺음말

**제주대학교 교수

1780~90년대에 작성된 대정현 4개 리(동성리·중문리·자단리·금물로리)의 호적중초를 통하여 조선후기 공노비의 존재양태에 대한 일면을 고찰하였다.

18세기 후반 대정현 상기 4개 리에는 45%내외의 공노비가 존재하고 있었다. 호적 기재양식에 있어서 공노비의 소속처는 물론 공노비의 모에 대한 기록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아가 공노비호의 경우에 있어서 本貫의 기재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고, 姓名의 기재는 奴와 婢가 차등이 있는데, 奴의 경우는 성명이 거의 모두 기록되어 있으나, 비의 경우는 명만 기재하고 있었다.

공노비의 가구구성은 대체적으로 2~4인 호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호당 평균 인구수는 4.0명에 불과하여 전체 호당 평균 인구수 5.8명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공노비의 혼인양태는 公媾가 相媾이 83.9%, 交媾이 16.1%정도이며, 公婢는 상혼이 84.9%, 交혼이 15.1%정도로 공노와 공비의 사회적 지위는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18세기 제주지역 공노비들의 免賤從良은 주로 代口免賤과 身賤役良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순조 원년(1801) 공노비 혁파로 제주지역의 공노비는 모두 양인 신분으로 전환되기에 이른다. 결국 18세기 후반 제주지역 공노비는 여러 면에서 열악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순조 원년을 계기로 일반 양인과 다름없는 사회적 지위를 획득해 나갔다.

1. 머리말

濟州 大靜縣 戶籍中草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신분제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에서 매우 흥미있는 하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제주지역에서 발견되는 1780~1790년대 戶籍中草에는 戶主의 상당수가 公奴婢戶로 기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18세기 중엽에 이르면, 격심한 노비의 도망과 婢의 격감으로 말미암아 노비의 재생산이 줄어들고 官奴婢·校奴婢를 제외한 공노비는 대부분 소멸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¹⁾ 단성현 호적대장의 분석을 통해 납공노비였던 寺奴婢는 17세기말 이래 격감하여 18세기 중반에 거의 소멸하였으며, 양인과의 경제적 제관계에 있어서도 별 차이가 없었음을 지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4-AM0010).

1) 정석중, 『조선후기사회변동연구』, 일조각, 1983; 전형택, 『조선후기노비신분연구』, 일조각, 1989; 平木 實, 『조선후기노비제연구』, 지식산업사, 1989; 이준구, 『조선후기신분지역변동연구』, 일조각, 1993; 김용만, 『조선시대사노비연구』, 집문당, 1997; 김석희, 『조선후기지방사학회사연구』, 혜안, 2004.

적하였다. 또한 가족관계 분석을 통해 공노비의 사회적 지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음을 밝힌 선행연구가 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에는 18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왜 이렇게 많은 공노비가 존재하고 있었을까. 이들의 경제적 처지뿐만 아니라, 향촌사회 내에서의 지위는 어떠한이었을까. 나아가 공노비와 소속처와의 관계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을까. 內寺奴婢의 혁파 이후, 이들의 職役移動을 통한 신분상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가 하는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필자는 공노비의 존재양태 및 1801년 공노비 혁파 이후 기존 공노비층의 신분변동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 글은 필자의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특히 공노비의 존재양태는 관아의 재정 및 당시 제주지역의 사회경제적 제조건과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여기서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18세기 말, 제주지역에 존재하는 공노비의 존재양태를 호적중초의 분석을 통하여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공노비의 신공부담 양태와 변화, 그들의 사회적 지위, 免賤形態의 하나로 인식되는 身賤良役의 실상에 대한 고찰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18세기 후반 제주도에 광범하게 존재했던 공노비들이 1801년 공노비 혁파 이후, 그들의 직업이동을 통한 신분변동의 모습을 고찰하는 문제는 추후의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주로 활용한 자료는 제주 대정현 지역에서 발견된 4개리의 18세기 후반 호적중초이다. 즉 正祖 10년(1786)의 東城里 호적중초, 中文里 호적중초, 정조 13년(1789)의 自丹里 호적중초, 정조 19년(1795)의 今勿路里 호적중초이다.³⁾

2) 김상환, 『조선 후기 공노비의 신분변동 : 17·8세기 단성현 호적대장을 중심으로』, 『경북사학』12, 1989; 임학성, 『조선 후기 공노비의 신분변동상에 관한 일연구 : 17·18세기 단성호적의 사례분석』, 『국사관논총』 86, 1999.

3) 제주지역 호적중초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金東攄, 『18·19世紀 濟州島의 身分構造 研究 : 『大靜縣戶籍中草』를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金東攄, 『조선 후기 제주 대정현 호적중초의 기초적 연구 : 하원·회수·월평리 호적중초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19, 2004; 金東攄, 『朝鮮後期 濟州地域 戶籍中草의 實態와 그 性格』, 『역사민속학』 20, 한국역사민속학회,

2. 18세기 후반 濟州 大靜縣의 身分構成

大靜縣은 태종 16년(1416)에 濟州牧에서 旌義縣과 함께 分置된 군현으로, 濟州島의 서남부 지역에 위치한다. 18세기 후반 대정현에는 1,700여 호에 8,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⁴⁾ 남자보다는 여자가 1,200여 명이 많아 女多인 濟州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上記 4개리(東城里·中文里·自丹里·今勿路里)의 호적상 호수는 390호이며, 낙장으로 확인 불가능한 27호(중문리 26호, 금물로리 1호)를 제외하면, 확인이 가능한 총 호수는 363호로 대정현 전체호수의 21.4%에 해당한다. 이들의 신분별 구성을 나타낸 것이 <표 1>이다.

<표 1> 18세기 후반 大靜縣의 身分職役別 構成

身分 職役	里	東城	自丹	中文	今勿	合 計	
	年	1786	1786	1786	1795		
兩班	副司果	1				1	
	兼司僕			1	1	2	
	出身	1	1			2	
	武科初試	1			1	2	
	儒 生	6			30	41	
	幼 學				1	2	
	留鄉別監				1	1	
	留鄉座首	1				1	
	鄉貢進士				1	1	
	校 生				7	8	
	(姓)氏					2	
	合 計	10	1	1	41	12	64
	%	9.9	1.5	1.5	32.0	18.2	17.6
中人	品 官			1		1	
	忠翊衛	2			1	3	

2005; 임학성, 『현존 16·17세기 호적대장의 특징들과 신발견 1666년도 ‘제주목병오식호 적대장’단편』, 『고문서연구』 26, 2005.

4) 『제주읍지』(규장각도서 No.10796); 『度支志』, 『戶口總數』.

	城將	4		1	4	9
	把摠		1			1
	將官	9	10	6	5	30
	業武	7	3	16	1	27
	鄉吏		1			1
	記官			2	3	5
	鎮訓導			2		2
	合計	22	15	28	14	79
	%	21.8	22.1	21.9	21.2	21.8
常民	小童			1		1
	假率	1	2	5	4	12
	使令			1		1
	旗牌	3	3	3		9
	鎮撫	2	1	4		7
	防軍	4	1	2		7
	烽軍	1				1
	遺軍	1				1
	沓漢				1	1
	紙匠	1				1
	弓匠	1				1
	席匠	1				1
	放砲手	1				1
	良人	1			5	6
	(姓)召吏	1		1		2
(姓)女	1	1	1	1	4	
合計	19	8	18	11	56	
%	18.8	11.8	14.0	16.7	15.4	
奴婢	官奴婢	5				5
	奉常寺奴	4	4	13	2	23
	禮賓寺奴	2	1	2	1	6
	內瞻寺奴	9	6	3	4	22
	內資寺婢	9	10	13	5	37
	軍器寺奴			4		4

掌隸院奴	1	1	2	1	5
司瞻寺奴	3	4	1		8
典醫監奴	2	1	1	1	5
仁壽府奴	2	1	2	5	10
仁順府奴	7	4			11
司帝監奴	2	4		2	8
宗親府奴		1			1
仁順府奴	1	2			3
司帝監奴	1	2			3
內資寺婢		2		1	3
內瞻寺婢		1			1
奉常寺婢	2				2
校 奴				6	6
校 婢				1	1
合 計	50	44	41	29	164
%	49.5	64.7	32.0	44.0	45.2
總 計	101	68	128	66	363
%	100	100	100	100	100

<표 1>에 의하면, 양반 17.6%, 중인 21.8%, 상민 15.4%, 노비 45.2%이다.⁵⁾ 어쨌든 이 자료만을 토대로 한다면 18세기 후반 대정현에는 주민의 거의 반이 노비 신분층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각 마을이 지니는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동성리는 대정현 관아가 위치해 있던 곳이며, 금물로리에는 대정향교가 위치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관노비는 동성리, 교노비는 금물로리에서만 확인이 된다. 또한 자단리는 이 곳에 거주하는 礪山宋氏를 중심으로 水鐵匠이 일부 성행하였던 곳이다. 중문리는 班村으로 지배층과 더불어 이들에게 예속된 사노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중문리 양반호중에서 노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2호에 불과하고, 그 수도 모두 4명에 이를 뿐이다. 이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8세기

5) 조선후기 제주도의 신분구조에 대한 연구는 김동진, 『조선후기 제주도 주민의 신분구조와 그 추이』, 『국사관논총』65, 국사편찬위원회, 1995, 참조.

후반 대정현에는 상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45%정도의 공노비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적으로 1703년경의 제주도 전체인구는 43,415명에 공노비의 수는 24,743명이었다.⁶⁾ 이는 도민의 56.9%가 공노비였음을 말해준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도 제주지역에는 공노비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제주도 대정현의 최소한 40%이상의 노비구성비는 동시기의 타지역인 丹城縣 8.0%(1786년),⁷⁾ 大邱府 5.0%(1789년),⁸⁾ 彦陽縣 1.08%(1798년),⁹⁾ 蔚山府 2.0%(1765년)¹⁰⁾와 비교해 볼 때, 제주 대정현 지역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타지역의 경우는 이 시기에 노비 신분층이 거의 소멸(寺奴婢는 대부분 소멸)되고 있으나,¹¹⁾ 제주지역에는 공노비가 매우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대정현 호적에 나타나는 노비호는 모두 공노비호로 私奴婢戶는 한 호도 나타나지 않는다. 공노비호 164호를 종류에 따라 분류해 보면 寺奴婢 152호, 官奴婢 5호, 校奴婢 7호로 대부분이 寺奴婢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을 다시 소속관서별로 보면, 내자시 40호(내자시노와 내자시비호의 합계), 봉상시 25호, 내섬시 23호, 사섬시 8호, 예빈시 6호, 군기시 4호, 인순부 14호, 인수부 10호, 종친부 1호, 사재감 11호, 전의감 5호, 장예원 5호로 나타난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표 2>이다.

6) 이형상, 『남환박물』, 노비조

7) 김상환, 『조선후기 공노비의 신분변동 : 17·8세기 단성현 호적대장을 중심으로』, 『경북사학』 12, 1989.

8) 四方博, 『李朝人口に關する身分階級別的觀察』, 『朝鮮經濟の研究』3 京城帝大法學會論集 第10冊, 1938.

9) 김석희, 『조선후기지방사회사연구』, 해안, 2004.

10) 정석중, 『조선후기사회변동연구』, 일조각, 1983, 249쪽.

11) 김상환, 『조선후기 공노비의 신분변동 : 17·8세기 단성현 호적대장을 중심으로』, 『경북사학』 12, 1989, 50-65쪽.

〈표 2〉 4개 리 호적증초에 나타난 공노비 호의 분포

종류	동성리	자단리	중문리	금물리	계
官奴婢	5				5
奉常寺奴	4	4	13	2	23
禮賓寺奴	2	1	2	1	6
內瞻寺奴	9	6	3	4	22
內資寺婢	9	10	13	5	37
軍器寺奴			4		4
掌隸院奴	1	1	2	1	5
司瞻寺奴	3	4	1		8
典醫監奴	2	1	1	1	5
仁壽府奴	2	1	2	5	10
仁順府奴	7	4			11
司帝監奴	2	4		2	8
宗親府奴		1			1
仁順府奴	1	2			3
司帝監奴	1	2			3
內資寺婢		2		1	3
內瞻寺婢		1			1
奉常寺婢	2				2
校 奴				6	6
校 婢				1	1
合 計	50	44	41	29	164
%	49.5	64.7	32.0	44.0	45.2

성현의 경우 1678년에서 1786년의 1공노비 변화가 寺奴婢 119 → 1구, 55 → 49구, 교노비 40 → 11구, 원노비 22 → 3구로 수적변화를 보인다.¹²⁾ 제주 대정현 지역에는 당시 서원이 없었기 때문에 원노비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정현

12) 김상환, 『조선후기 공노비의 신분변동 : 17·8세기 단성현 호적대장을 중심으로』, 『경북사학』 12, 1989, 50-65쪽

지역의 공노비는 寺奴婢 152호, 관노비 5호, 교노비 7호로 90%이상이 寺奴婢로 단성현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즉, 다른 지역과 달리 寺奴婢가 제주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점이 바로 제주의 특수한 상황이었다. 이는 조선시대에 제주가 경제적 수탈지역으로 부상하면서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18세기 후반 제주지역에는 어느 정도의 공노비가 존재하고 있었을까. 이를 위해 1793年(正祖 17)경에 작성된 『濟州大靜旌義邑誌』¹³⁾의 奴婢條를 참조하여 당시 제주도의 공노비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1793年頃 濟州島의 公奴婢 數

所屬	三邑		濟州牧		大靜縣		旌義縣		合計
	奴	婢	奴	婢	奴	婢	奴	婢	
內需司	352	372							724
內資寺	1,023	1,815	68	89	1,503	1,733			6,231
內瞻寺	675	1,373	81	103	121	765			3,118
奉常寺	254	744	81	98	102	185			1,464
仁順府	316	579	36	98	95	135			1,259
仁壽府	194	291			102	172			759
司宰監	2	5	50	47					104
禮賓寺	60	196	53	73					382
司瞻寺	101	264	52	61	75	103			656
宗親院		3	18	24					45
掌隸院	157	264	13	19	21	45			519
大君傍	23	18							41
軍器寺			33	47	12	19			111
典醫監			46	58					104
官奴婢	48	53	23	16					140
校奴婢	12	5	8	3					28
院奴婢	8	4							12
合計	3,225	5,986	562	736	2,031	3,157			15,697

<표 3>에 의하면 1793년경 제주도의 공노비 규모는 濟州牧이 9,211口, 大靜縣이 1,298口, 旌義縣이 5,188口로 모두 15,697口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큰

13) 『濟州大靜旌義邑誌』(奎章閣所藏 No.17436); 『邑誌六：濟州道』, 亞細亞文化社, 1983.

차이는 아니지만, 실지 공노비 수는 이 보다 많은 수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위 기록상으로는 仁壽府奴婢가 대정현에는 전혀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1795년 今勿路里 호적에서는 仁壽府奴戶가 5호나 확인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의현의 경우에 있어서도 관노비와 교노비의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실제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된다. 즉, 정의현의 官衙와 鄉校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여기에 소속된 노비가 1口도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공노비의 규모는 15,697口 보다는 다소 많은 수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어떻든 1793년경의 15,697口라는 공노비 수는 18세기 초의 公奴婢數 24,743口¹⁴⁾에 비해서는 9,000여 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8세기 말에 이르면 공노비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던 시노비가 급격히 감소되는 현상¹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에는 강하게 남아 있음을 보여 준다.¹⁶⁾ 이는 그 만큼 제주지역의 공노비에 대한 구속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호적상에 나타나는 공노비호의 기재 양식은 어떠했는가. 일반적으로 公奴婢戶의 호적 기재양식이 일반인의 호적 기재양식과 다른 점은 일반인

- 14) 李衡祥, 『南宦博物』,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影印本, 1979, 43쪽. 奴婢條 參照. 이에 의하면 公奴婢의 수는 官奴 165口, 官婢 149口, 內需司奴婢 427口, 各司奴婢 23,948口, 大君房奴婢 26口, 鄉校奴婢 21口, 書院奴婢 7口로 모두 24,743口이다. 이는 당시 제주도 인구 43,515명(李衡祥, 『耽羅巡歷圖』,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影印本, 1979, 43쪽)의 56.7%에 해당한다.
- 15) 당시 公奴婢 감소의 요인은 二重收貢에 따른 冒避, 逃散 또는 신공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노비안에서 漏脫시키거나, 出生·物故·逃故·移徙 등에 대한 보고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蔭漏者가 많아졌기 때문이다(全炯澤, 『朝鮮後期奴婢身分研究』, 一潮閣, 1989, 110-119쪽).
- 16) 이는 丹城의 寺奴婢 수의 변화와 비교 했을 때 확연히 드러난다. 단성의 경우 金相煥, 앞의 논문, 63쪽 참조.

地域	1678年	1704年	1750年	1786年	1793年頃
丹城	119		11	1	
濟州		23,948			14,793

의 호적에서는 戶主와 妻의 四祖가 기재되게 되어 있으나, 공노비의 경우는 호주와 그 처의 四祖가 아니라 父母만이 기재되며, 그리고 소속관서를 기록하여 소유주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1714년(肅宗 40)에 『甲午式戶籍事目』이 공포된 이후, 公私賤을 막론하고 四祖名과 母名, 그리고 소속 官主를 기재하여 상당히 양인의 호적과 유사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공노비들은 그들의 지위를 상승시켜 나가기 위하여 四祖의 職役과 母의 身分을 기재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피하여 名만을 기재하는 현상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경우는 달랐다. 우선, 제주지역 公奴婢戶의 기재 양식과 내용을 호적에서 몇 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事例 ① 1783年(正祖 7) 東城里 戶籍中草

1統 2戶 內資寺奴營紙匠佐千弘年五十五己酉本大元父寺奴太碩年七十六戊子祖正兵日先曾祖正兵末叱金外祖名不知母寺婢有玉妻奉常寺婢萬玉年五十三辛亥本茂安父寺奴世貴祖曾祖名不知外祖寺奴韓宗立本清州母同寺婢韓眞
率前妻女仁順府婢尙月年二十七丁丑母名不知
率外孫子同寺奴營紙匠金萬石年二壬寅
率花妻仁順府婢日尙年四十八丙辰父寺奴梁白日母名不知
率妻弟同寺婢萬碧年四十一癸亥

事例 ② 1789年(正祖 13) 東城里 戶籍中草

13統 3戶 官奴姜尙龍故代弟官奴成彥昌年二十四丙戌本昌寧父鎮撫
春永祖書員以完曾祖納粟通政進業外祖鄉吏洪才永本南陽
母同官婢雪中梅年四十八壬戌
率妹同官婢桂蟾年二十庚寅父良人文德晚
率外姪子同官奴吳時見年二戊申父良人命夏
率弟同官奴崔東年十三丁酉父良人命益憲
次弟同官奴尹永吉年九辛丑父良人命復厚

事例 ③ 1795年(正祖 19) 今勿路里 戶籍中草

3統 1戶 校奴李成年三十九丁丑本完山父鎮撫五立祖良人取完曾祖

名不知外祖寺奴吳之寬本海州

母同校婢仁德年七十丙午

妻奉常寺婢永月年四十一乙亥本不知父寺奴次億祖良人廷

已曾祖私奴金外祖私奴姜同本大完(元)母同寺婢仁賓

率子同寺奴募軍萬水年十五辛丑

次子同寺奴募軍萬兼年十三癸卯

次子同寺奴募軍萬石年七己酉

率女同寺婢萬今年五辛亥

生次女同寺婢萬德年二甲寅

제주도의 경우, 事例 ① ② ③에서 보면 寺奴戶·官奴戶·校奴戶 모두 戶主와 妻의 四祖의 직역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만 四祖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不知’라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四祖를 알기만 한다면 호적상에 충분히 기재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때 노비호의 기재양식도 일반인의 호적에 가깝게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적어도 호적 기재양식에 있어서 이전에 비하여 양천간의 신분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의 경우, 母가 생존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母名을 반드시 기록하고 있어 일반인의 호적과 여전히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호적상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공노비의 경우, 本貫이 매우 철저히 기록되고 있다는 점과 奴의 경우는 姓도 반드시 기록하고 있는 점이다. 婢의 경우는 名만을 기재하고 있다. 이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으나, 제주지역 공노비의 상당수는 범죄자 및 그에 연좌된 자들로 본래 그들의 姓과 本貫을 지니고 있던 신분에서 노비화되었던 결과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1781

년(정조 5) 박천형이 제주시재어사로 선임되자, 비변사에서 박천형에게 내린 사목의 내용 중에 ‘제주 삼읍에는 역적의 자녀로 노비가 된 자가 많아 그들의 소요가 염려되므로 노비끼리의 상통, 육지인과의 교섭을 엄금하도록 조치’하고 있다.¹⁷⁾

3. 제주 지역 公奴婢의 身貢과 그 變化

공노비는 選上立役과 納貢의 두 가지 의무 중 하나를 부담하였는데, 선상입역시에는 납공이 면제되고 납공시에는 선상입역이 면제되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공노비는 대부분 입역노비였다. 그리고 지방관아에 소속된 관노비나 교노비 등도 입역노비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방에 거주하는 왕실 및 중앙관서 소속의 노비는 選上立役하거나 納貢으로서 그 의무를 대신하였다. 조선전기만 해도 제주도에 거주하는 공노비 역시 입역이나 납공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그런데 입역을 끝내고 돌아오는 도중에 노비들이 도망가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왕래에 많은 폐단이 발생하면서 점차 입역의 의무는 신공으로 단일화되어 나가게 된다. 또한 選上立役의 경우 임란 이후에 雇立制의 형태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폐지되고 말았다. 따라서 종래 選上立役의 의무를 지고 있던 공노비는 身貢 납부의 의무만을 부담하였다.¹⁸⁾

본래 공노비의 身貢 액수는 『經國大典』에 奴의 경우 綿布 1필, 楮貨 20장, 婢의 경우 면포 1필, 저화 10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綿布로 환산하면, 노의 경우 2필, 비의 경우 1필 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納貢 物品은 점차 米·布·錢 등이 병용되기도 한다. 收貢은 매년 1회 秋冬에 지방관의 책임하에 거두어 사섬시에 귀속되었다.¹⁹⁾

신공수납은 지역에 따라 액수나 품목이 매우 다양하였다. 以南 6道の 경우

17) 『정조실록』, 정조 5년 6월 무자(17일).

18) 전형택, 『조선후기노비신분연구』, 일조각, 1989, 83-119쪽.

19) 平木 實, 『조선후기노비제연구』, 지식산업사, 1989, 16-27쪽.

는 규정대로 지켜졌으나, 함경도와 평안도는 규정에 비하여 과중하였다. 제주 지역의 경우, 애초의 身貢 물종은 布였으며, 정확한 액수를 알수는 없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元貢의 부담이 적은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제주삼읍 노비의 貢布는 중앙으로 移屬하지 않고, 濟州牧의 州倉에 보관하였다가 필요시에 공용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牧馬 번식에 필요한 자원, 軍糧 확보의 자원, 進上에 필요한 물종의 자원 등으로 주로 이용되었다.²⁰⁾ 중종 5년(1510) 제주 목사 장임은 제주 삼읍의各司 노비 신공 棉布 4천 4백 2필을 활용하여 활을 개조하도록 하여 제주 방어에 충실하도록 하였다.²¹⁾ 진성이나 관아 건물을 개조할 경우에 그에 필요한 기와를 공노비로 하여금 굽도록 하고, 대신에 2년의 身貢을 거두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²²⁾

宣祖 이후 군량확보란 차원에서 신공 품목을 米로 납부하는 미봉책이 실시되다가, 현종 7년(1666)부터 米納化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때 布 1필을 米 7두로 정액화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공노비들의 신공은 애초의 元貢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米 2斗를 제주목에서 수납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는 목마 번식, 군량 외에 주로 救荒을 위한 賑資로 이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米 2斗는 그 이후 제주지역 공노비의 신공액으로 거의 정액화되었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노비들 가운데는 바다를 건너 타지방에 거주하는 소위 出陸奴婢가 1만 명에 이를 정도로 상당수였는데,²³⁾ 그 收貢에 많은 폐단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출륙노비들이 貢米를 납부하기 위하여 바다를 왕래해야 하는 폐단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에 현종 5년(1664)에는 10년 이내의 출륙노비는 제주로 刷還시키고, 그 외의 출륙노비는 所在官이 貢米를 收貢하여 京司에 直納토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었다.²⁴⁾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얼마없어 소재관이 收貢한 貢米를 제주로 移屬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제주지역 공노비의 年 米 2斗는 현종 이후 타지역 공노비의 신공액 奴 면

20) 『성종실록』 성종 20년 3월 신미(13일); 『중종실록』 중종 16년 3월 임술(10일).

21) 『중종실록』 중종 5년 9월 기사(16일).

22) 『중종실록』 중종 20년 10월 임진(7일).

23) 『현종실록』 현종 5년 11월 경자(13일).

24) 『현종실록』 현종 5년 11월 정유(10일).

포 1필 반,婢 1필에 비하면 유리한 것이었다. 이는 布 노 1필, 비 1/2필로 감액 조치가 이루어진 영조 31년 이후와 비교해도 그러하다. 그러나, 미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제주의 농업환경을 고려해 볼 때, 결코 유리한 것만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계속된 흉년 등으로 인하여 관아의 신공 징수가 여의치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1703년에 작성된 『耽羅狀啓草』에 의하면, 1695년부터 1702년까지 寺奴婢로부터 받지 못한 신공이 무려 1,260石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구나 흉년시에 신공의 收貢은 더욱 어려웠고, 심지어 노비의 유망을 막고 안정적인 수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공을 반으로 감하는 조치가 여러 차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영조 50년(1774) 寺婢의 신공이 전면적으로 혁파되기에 이르자, 濟州官衙의 재정은 더욱 부실하여 질 수 밖에 없었다. 婢貢의 혁파는 婢가 거의 소멸되어 가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취해진 조치였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는 이와 달리 많은 수의 婢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에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는 寺奴보다 寺婢의 수가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관아 재정에서 婢貢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다. 이에 관아에서는 매년 賑廳穀의 300石을 公用에 충당하는 한편, 婢役價로 每口 錢 1냥을 징수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조치를 취하였다.²⁵⁾ 그리고 婢貢의 혁파에도 불구하고 제주에 거주하는 婢에게는 米 1斗 혹은 5升을 여전히 징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790년대에 이르러서도 공노비를 유지하기 위한 관아의 적극적인 노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寺奴婢之以生爲死, 隱丁漏籍, 自有法禁是去乙, 至於此島, 所謂頭目惟意幻弄, 罔有絕極, 以賤爲良, 不知其幾分叱不喻, 捧其身貢之際, 奴之一斗 必捧二斗, 婢之五升 必捧一斗, 甚至於勤徵老弱, 而無所顧忌, 以此頭目次知, 奴婢則良賤之淆雜, 死生之紊亂, 必之於莫可矯予之境, 故奴婢頭目段, 一併出定牧子, 以

25) 『영조실록』 영조 51년 4월 병술(8일).

懲其罪是遣，頭目既罷，則奴婢去就，自當責之於該里是如乎，該里尊位·警民長次知舉行，而亦不可一任，其該里故都案一件成置，營門各里良中，亦爲成案，以給爲去乎，此後段奴婢之物故·生産·移來·移去，各其里尊位·警民長直報營門，則吏房營吏次知，收捧是如可，每於歲末成公文，奪付爲齊。

奴婢數多，若過數年，雜奪胡亂，必有奸弊奴婢都案，兩年一次改修正爲齊。

奴婢頭目，今已革罷，各司上納本錢則付之補役庫，使之取利，物種則付之該色使之買納爲齊²⁶⁾

즉, 寺奴婢의 隱丁·漏籍, 頭目에 의한 환릉의 폐단으로 천인이 양인으로 둔갑하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목이 신공을 거두어들이면서 그 배에 해당하는 신공을 수납하는 폐단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두목을 혁파하고, 노비안을 2년에 한 차례 改修正토록 함으로써 노비제의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4. 제주 지역 公奴婢의 社會的 地位

1) 家口構成

<표 4>는 공노비호의 가구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공노비호의 家口數別 戶數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은 3人戶로 23.2%이다. 그 다음으로 4人戶와 2人戶 순이다. 2~4인호가 전체의 59.8%로 공노비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26) 『正祖 15年(1791) 辛亥大靜縣釐正節目』.

〈표 4〉 公奴婢戶의 家口數別 戶數

戶內家口數	戶數(%)	戶內家口數	戶數(%)
1	13(7.9)	7	7(4.3)
2	29(17.7)	8	6(3.7)
3	38(23.2)	9	1(0.6)
4	31(18.9)	10	3(1.8)
5	19(11.6)	13	1(0.6)
6	16(9.7)	合計	164(100)

공노비호의 호당 평균 인구수는 164호에 649명이 거주하고 있어 4.0명으로 나타난다. 당시 제주도 전체의 호당 평균 인구수가 1786년이 5.82명, 1789년이 5.89명, 1792년이 5.99명이었다. 이와 비교했을 때 공노비호의 호당 평균 인구수는 거의 2명이나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확실히 단언할 수는 없겠으나 공노비호가 지나는 경제적 여건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이는 공노비의 경제적 여건이 일반 양인층에 비하여 열악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교노비의 처지가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관노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 結婚樣態

公奴婢의 結婚樣態에서 나타나는 配偶者의 분석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公奴婢의 결혼 양상은 일반적으로 원래 賤賤相婚의 성향이 강했으나, 17세기 이후 점차 良賤交婚이 확대되어 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공노비층이 점차 사회·경제적으로 성장하여 간 데에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노비의 경우는 私奴婢와는 달리 소유주의 노비증식 기도가 거의 없이 노비와 배우자의 의사에 의해 혼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交婚의 증가는 양인층의 지위하락과 노비의 지위상승의 결과라는 것이다.²⁷⁾ 그러면 제주 대정현의 경우는 어떠했는가. 먼저, 大靜縣 上記 4個里의 戶籍에서 확인되는 공노비의 年齡別 分布

를 나타낸 것이 <표 5>이다.

<표 5> 公奴婢의 年齡分布

區分	1~10	11~15	16~25	26~35	36~45	46~60	61以上	?	計
寺奴	64	28	37	26	32	56	34		277
寺婢	75	29	33	49	44	77	38	3	348
官奴	2	1	3			1			7
官婢			3	2	2	1			8
校奴			2	1	2	1			6
校婢		1			1		1		3
計	141	59	78	78	81	136	73	3	649
%	21.7	9.1	12.0	12.0	12.5	21.0	11.2	0.5	100

공노비의 연령별 구성은 1~15세까지가 30.8%, 16~60세까지가 57.5%, 60세 이상이 11.2%의 분포를 나타낸다. 公奴와 公婢의 비율은 공노가 290명으로 44.7%, 공비가 359명으로 55.3%를 차지하여 공비의 비율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6> 公奴의 結婚樣態

本人	配偶者	東城里	中文里	自丹里	今勿路里	合計	%
寺奴	寺婢	24	30	15	10	79	79.3
校奴	寺婢				4	4	4.6
合計		24	30	15	14	83	83.9
寺奴	良女	3				3	3.4
	召史	7		1	1	9	10.4
官奴	召史	2				2	2.3
合計		12		1	1	14	16.1
總計		36	30	16	15	87	100

27) 韓榮國, 『조선중엽의 노비결혼양태(상·하) - 1609년의 蔚山府 戶籍에 나타난 事例를 中心으로』, 『歷史學報』 75·76, 1977; 『歷史學報』 77, 1978; 朴容淑, 『朝鮮後期鄉村社會研究』, 慶北大博士學位論文, 1986.

公奴의 결혼양태는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相婚이 83.9%, 交婚이 16.1%이다. 相婚率이 交婚率보다 5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1609년의 울산지역 교혼율 29.7%, 상혼율 70.3%보다도 상혼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寺奴는 81사례 중에 85.2% 정도가 서로 婢와 相婚하는 모습을 보인다. 寺奴의 교혼은 14.8%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校奴와 官奴의 혼인은 사례가 매우 적어 이를 토대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교노는 相婚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官奴는 2사례 모두 交婚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적인 公奴의 혼인양태는 83.9%가 상혼을 하고 있어 노비간의 혼인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公奴의 혼인에 있어서 16.1%만이 交婚하고 있다. 제주 지역의 경우, 노비간의 상혼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良.賤간의 신분격차가 여전히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公婢의 혼인 양상은 官婢와 校婢의 혼인 사례가 없어서 여기서는 寺婢에 국한하여 살필 수밖에 없었다. <표 7>은 公婢의 결혼양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표 7〉 公婢의 結婚樣態

本人	配偶者	東城里	中文里	自丹里	今勿路里	合計	%
寺婢	寺奴	25	30	18	12	85	80.2
	官奴	1				1	0.9
	校奴				4	4	3.8
合計		26	30	18	16	90	84.9
寺婢	良人弓匠	1				1	0.94
	業武馬隊	1				1	0.94
	紙匠東伍	1				1	0.94
	良人營遺軍	1				1	0.94
	良人防軍	2	1			3	2.8
	良人遺軍			1		1	0.94
	良人城丁		1			1	0.94
	假率馬隊				1	1	0.94
	西歸鎮訓導		1			1	0.94

	慕瑟鎮訓導		1			1	0.94
	記官				1	1	0.94
	業武			1		1	0.94
	忠翊衛		1			1	0.94
	幼生		1			1	0.94
	合計	6	6	2	2	16	15.1
	總計	32	36	20	18	106	100

<표 7>에 의하면, 전체 106개의 사례 중에 奴와의 相婚은 모두 90개의 사례로 84.9%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은 寺奴와의 相婚으로 당시 寺奴와 寺婢간의 혼인이 거의 일반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寺婢의 交婚은 모두 16개 사례로 15.1%에 이른다. 이 수치는 公奴의 交혼율 16.1%와 거의 비슷한 현상이다.

寺婢의 交혼을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면, 대부분이 양인과의 혼인이었으나 記官, 業武, 忠翊衛 등의 職役을 칭하는 자와의 혼인 사례가 각기 한 사례씩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儒生의 직역을 칭하는 자와의 혼인 모습도 보이고 있어, 公奴에 비하여 배우자 계층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寺婢 본인과 배우자의 나이를 비교해 본 결과, 정상적인 혼인이 아닌 作妾에 의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이 7사례나 나타나고 있다. 특히, 儒生(50세)과 寺婢(43세)의 혼인인 경우, 나이상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호적상으로 볼 때 처4조의 기록이 부실한 것으로 보아 妾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비의 交혼율이 15.1%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영조 50년(1774)에 婢貢이 혁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婢의 지위향상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공노비의 혼인양상을 타지역과 비교하더라도 제주도에는 賤賤相婚 현상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從母法 하에서 婢에 의한 노비의 재생산이 18세기 말까지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他地域과의 公奴婢 婚姻率 비교

(단위 : %)

區 分	地 域	濟州 大靜	蔚 山	丹城			
	時 期	1780년대	1609년	1678년	18c 전반	18c 중반	18c 후반
公 奴	相婚率	83.9	70.3	78.3	62.9	35.9	100.0
	交婚率	16.1	29.7	21.7	37.1	64.2	
公 婢	相婚率	84.9	63.9	42.5	40.0	13.0	
	交婚率	15.1	36.1	57.5	60.0	86.9	100.0

즉, <표 8>를 볼 때에 제주 대정현의 혼인양상은 1609년의 울산보다도 상 혼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노비의 결혼양태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公奴婢 母의 身分 分析

신분상승에 대한 공노비의 욕구가 호적상으로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母의 신분 기재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가 하는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四祖의 분석을 통한 접근도 행해져야 하겠으나, 영조 7년 종모법의 실시 이후 母系가 그들 신분의 귀속을 직접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母의 신분 기재 분석을 통해 그들의 冒錄 현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비들에게 모계는 신분귀속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호적 기재에 있어서 노비의 경우는 母의 생존여부를 떠나 모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기재토록 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중반 이후에는 노비호의 호적 기재에 있어서 母의 기재를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현상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 대정현의 경우, 이외는 매우 다른 양상을 지니고 있었다.

〈표 9〉 公奴婢 母의 身分 記載 實態

母의 身分	婢					良人			不知	無記載	合 計
	寺婢	官婢	校婢	私婢	計	良女	召史	計			
公奴婢	139			1	140	1	1	2	2	9	153
寺奴婢		3			3					1	4
官奴婢	1		4		5				1	1	7
校奴婢				1	1						
合計	140	3	4	1	148	1	1	2	3	11	164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4호 중에서 母를 기록하지 않은 것이 11사례에 지나지 않으며, ‘不知’는 3사례에 불과하다. 나머지 150사례는 모두 철저히 모의 신분을 기재하고 있다. 籍吏와의 결탁 등에 의한 모록의 현상은 적어도 모의 기재에서는 찾을 수 없다. 150사례 중에 母의 신분이 양인 신분인 경우는 2사례뿐이며, 나머지 148사례는 모두 노비이다. 종모법 하에서 媵에 의한 노비의 재생산은 차단되어 있었고, 오직 婢에 의한 재생산만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노비의 母에 대한 기록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적어도 제주도에서는 노비의 사회적 지위가 나아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5. 제주 지역 공노비의 免賤從良

조선후기 노비의 免賤從良 形態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軍貢從良, 公私賤으로 武科 入格者에 대한 從良, 納粟從良, 功勞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功勞, 代口免賤, 身賤役良에 의한 功勞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제주지역 공노비들의 從良은 功勞, 代口免賤, 身賤役良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功勞從良은 국가에 대한 공로가 발생하였을 경우 公私賤 자신과 그 가족에 대하여 실시한 것이다. 주로 因山 때에 바다를 건너가 赴役에 응하였을 경우나 義로운 행위를 하였을 경우, 흉년시에 賑穀米를 관아에 바친 경우 등에 功勞從良이 실시되었다.²⁸⁾

代口免賤은 노비가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을 밀어 넣고 從良되는 것을 말한

다. 제주지역의 경우 이러한 면전은 18세기 초에 합법화되었다. 즉, 면전을 원하는 公奴婢는 壯奴婢의 경우 私奴婢 5口, 弱老奴婢는 私奴婢 3口를 사서 관아에 바치면 면전을 허락받았다. 1703년경 제주에는 육지에서 도망하여 들어와 奴主가 분명하지 않은 사노비가 3,000여 口에 이르고 있었다. 이들의 원망은 奴主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노비를 침해하는 자가 많게는 6.7처, 적게는 2.3처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관아에서는 이들의 원한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노비들이 사서 납부한 사노비들을 공노비화하였다. 이 경우 사노비에게는 공노비가 됨으로써 한 곳에만 신공의 의무를 부담하는 이로움이 있었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공노비를 양인화함으로써 良役이 충실해 질 수 있는 이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노비들이 대거 공노비화 됨으로써 이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貢物이 배로 늘어나는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²⁹⁾

그러나 18세기 후반 제주지역에는 공노비들에게 일정 기간동안 良役을 부담지우는 대가로 從良해 주는 身賤役良에 의한 면전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良役に 양인을 대신하여 공노비가 진출하면서 점차 면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물론 당대의 면전에는 어려움이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노비가 1~2대에 걸쳐 良役을 지게 되면, 그 후손에게는 면전의 방도가 마련되었다. 더구나 제주도에서는 조선초기부터 牧子의役に 공천으로 충당하는 관행이 있어 왔다. 그리고 제주의 경우 良人の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공노비의 양역 진출은 어찌면 당연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현상에서 공노비의 양인화는 자연스럽게 추진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노비들의 지위 상승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국가의 필요성에 의하여 추진되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8) 平木 實, 『조선후기노비제연구』, 지식산업사, 1989, 152-191쪽.

29) 이형상, 『병외문집』, 『탐라장계초』.

〈표 10〉 18세기 후반 公奴婢의 良役實態

役 公奴婢	奉常寺奴	內資寺奴	內瞻寺奴	禮賓寺奴	軍器寺奴	司瞻寺奴	典醫監奴	司帝監奴	掌隸院奴	仁壽府奴	仁順府奴	宗親府奴	計
譯生		2											2
記官			1						1				2
醫生										1			1
書員	2	6	1	2	4			2	2	1	1		21
鎮書記	1		1			1							3
直軍	1	2	1				1				1		6
除番軍											1		1
防軍	3	1	4			2			1				11
募軍		1		1									2
牙兵		5				1				1			7
使令	1	1	2										4
羅將											1		1
羅將隨率									1		1		2
牧子城丁											1		1
牧子	2	4	4	1		1	3		1	1			17
習馬	1							1					2
果直	1										1	1	3
沓漢	1	2	1			1							5
守成木手											1		1
紙印											1		1
紙匠		3	1								1		5
匠人	2		1			1		1			2		7
弓人		1											1
水鐵匠	1		1										2
山尺							1						1
官奴						1							1
其他	4	4	3	1			2			1	1		16
合計	20	32	21	5	4	7	5	7	5	4	15	1	126

대정현 호적에 나타난 18세기 말의 身賤役良의 실상은 <표 10>에서 확인 되는 바와 같이, 公奴의 86.5%정도에 이르고 있다. 당시 고역으로 인식되던 牧子·果直·番漢·紙匠·防軍·牙兵 등 소위 ‘六苦役’에³⁰⁾ 주로 공노비들이 충당되고 있었다. 또한 匠人·水鐵匠·守城木手 등의 職役, 심지어는 記官·譯生·醫生 등 中人의 직역으로 생각되는 役에도 그들을 대신하여 공노비가 진출하고 있었다. 공노비의 양역 진출은 이를 통한 免賤從良의 길이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6. 맺음말

지금까지 1780~90년대에 작성된 대정현 4개리의 호적중초를 통하여 조선 후기 공노비의 존재양태에 대한 일면을 고찰하여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세기 후반 대정현 상기 4개리(동성리·중문리·자단리·금물로리)에는 호적상 390호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는 지배층이 40%정도, 피지배층이 60%정도였으나, 피지배층에서는 상민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공노비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상기 4개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제주도내에는 당시 최소한 30%이상의 공노비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공노비호 164호는 시노비 152호, 관노비 5호, 교노비 7호로 대부분 중앙관서 소속의 시노비였다.

둘째, 공노비호의 기재양식은 일반인의 호적과 마찬가지로 호주의 4조 및 처의 4조를 대부분 기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재양식에 있어서 일반인의 호적과는 달리 공노비의 소속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가 생존하지 않은 경우도 모의 기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처모의 기재는 다소 부실한 반면, 호주모의 기재는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음으

30) 金東柱, 『18·19세기 番漢의 신분적 지위와 그 변동』, 『역사민속학』 3, 한국역사민속학회, 1993.

로 공노비호의 경우에 있어서 본관의 기재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고, 姓名의 기재는 奴와 婢가 차등이 있는데, 奴의 경우는 성명이 거의모두 기록되어 있으나, 婢의 경우는 名만 기재하고 있었다.

셋째, 제주에 거주하는 공노비들의 신공부담은 조선초기의 경우 액수는 정확하지 않으나 物種은 布가 원칙이었으며, 이를 중앙에 상납하지 않고 제주목의 州倉에 會錄하였다가 공용에 충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러 신공부담의 물종이 米로 대체되었고, 그 액수는 2두로 정액화되어 타지역에 비해 元貢의 액수는 다소 유리했으나, 이들의 경제적 처지가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 婢貢의 혁파 이후에도 제주에 거주하는 婢는 婢役價를 每口 錢 1냥 혹은 米로 부담하였다.

넷째, 공노비의 사회적 지위는 아직도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노비의 가구구성은 대체적으로 2~4인호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호당 평균 인구수는 4.0명에 불과하여 전체 호당 평균 인구수 5.8명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공노비의 경제적 여건이 양인층에 비하여 열악했다는 면에서 그 요인을 찾았다. 그리고, 공노비의 혼인 양태는 公奴가 상혼이 83.9%, 교혼이 16.1%정도이며, 公婢는 상혼이 84.9%, 교혼이 15.1%정도로 그 사회적 지위는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는 제주에 거주하는 공노비가 타지역에 비하여, 그들의 사회적 지위 상승이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는 제주지역의 경우 賤人에 대한 차등이 매우 강하게 유지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공노비 母의 분석을 통해서도 신분 상승에 대한 공노비의 노력은 미미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호적기재에 母의 기재에 대한 의도적인 기괴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의 신분은 대부분이 寺婢에 해당하고 있었다.

다섯째, 免賤從良은 주로 代口免賤과 身賤役良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주종은 신천역량을 통한 從良으로 이해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國役 대상자인 良人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公奴의 86.5%정도가 良役을 부담하고 있을 정도였다.

일반적으로, 입관 이후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계요인에 의하여 신분의 상하

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노비는 그들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조치로 노비의 신분적 굴레에서 벗어나 신분상승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고 있었다. 공노비도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조선후기 공노비의 존재형태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비록,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이 제주의 특수적인 현상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선후기 공노비의 존재형태에 대한 호적상의 검토는 일부 丹城地域의 사례에 국한되어 있었고, 그 결과 18세기 중반에 이르면 공노비가 거의 소멸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확일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지역에 따라 차이성이 있었음을 본 고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지역의 사례 연구가 더욱 진척될 때 조선 후기 공노비의 존재양상 및 신분변동의 문제가 분명하게 해명될 것이다.

[주제어] 공노비, 대정현, 호적중초, 동성리, 중문리, 금물로리, 자단리, 寺奴婢, 관노비, 교노비, 혼인, 제주.

■ 참고문헌

『今勿路(沙溪)里戶籍中草』, 사계리사무소 소장.

『度支志』

『東城里戶籍中草』, 안성리사무소 소장.

『병와진집』

『自丹(德修)里戶籍中草』, 덕수리사무소 소장.

『濟州大靜旌義邑誌』,奎章閣圖書 17436.

『濟州邑誌』,奎章閣圖書 10796.

『中文里戶籍中草』, 중문마을회관 소장.

『戶口總數』

權仁赫, 『19世紀 前半 濟州地方의 社會經濟構造와 그 變動』, 『李元淳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 敎學社, 1986.

金東柱, 『18·19세기 畚漢의 신분적 지위와 그 변동』, 『역사민속학』 3, 한국역사민속학회, 1993.

_____, 『18·19世紀 濟州島의 身分構造 研究 : 『大靜縣戶籍中草』를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_____, 『조선후기 제주도 주민의 신분구조와 그 추이』, 『국사관논총』 65, 국사편찬위원회, 1995.

_____, 『조선후기 제주 대정현 호적중초의 기초적 연구 : 하원·회수·월평리 호적중초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19, 2004.

金東柱, 『朝鮮後期 濟州地域 戶籍中草의 實態와 그 性格』, 『역사민속학』 20,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吉田光男, 『一六六三年『漢城府北部戶籍』に見える身分標識と身分·職役』(武田幸男編, 『朝鮮社會의 史的展開と東アジア』, 日本 : 山川出版社, 1997에 所收).

김상환, 『조선후기 공노비의 신분변동 : 17·8세기 단성현 호적대장을 중심으로』, 『경북사학』 12, 1989.

김석희, 『조선후기지방사회사연구』, 혜안, 2004.

김용만, 『조선시대사노비연구』, 집문당, 1997.

武田幸男, 『學習院大學藏 朝鮮戶籍大帳의 基礎的 研究-19世紀 慶尙道 鎭海縣의 戶籍臺 帳について』,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1977.

朴容淑, 『朝鮮後期 鄉村社會研究』, 慶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 1986.

四方博, 『李朝人口に關する身分階級別的觀察』, 『朝鮮經濟の研究』 3, 京城帝大法學會論集 第10冊, 1938.

윤석효, 『임란후의 노비신분변동에 관한연구』, 『한성사학』 1, 한성사학회, 1983.

이준구, 『조선후기신분지역변동연구』, 일조각, 1993.

- 임학성, 『조선후기 사노비의 신분변동상에 관한 일연구 : 17·18세기 단성호적의 사례분석』, 『인하사학』 3, 1995.
- _____, 『평민가문의 직역변동상을 통해서 본 조선 후기사회의 신분제동요 : 17·18세기 단성호적의 사례분석』, 『인하사학』 4, 1996.
- _____, 『조선후기 공노비의 신분변동상에 관한 일연구 : 17·18세기 단성호적의 사례분석』, 『국사관논총』 86, 1999.
- _____, 『조선후기 목마군 일가의 가세변화』, 『한국학연구』 10, 인하대, 1999.
- _____, 『조선후기 戶籍에 등재된 兩班職役者의 身分 : 1786년도 丹城縣縣內面의 사례분석』, 『조선시대사학보』 13, 2000.
- _____, 『조선 후기 漢城府民의 戶籍자료에 보이는 ‘時入’의 성격 : 漢城府 주민의 住居 양상을 究明하기 위한 一試論』, 『古文書研究』 24, 2004.
- _____, 『현존 16·17세기 호적대장의 특징들과 신발견 1666년도 ‘제주목병오식호적대장’ 단편』, 『고문서연구』 26, 2005.
- 임학성, 『현존 16·17세기 호적대장의 특징들과 신발견 1666년도 ‘제주목병오식호적대장’ 단편』, 『고문서연구』 26, 2005.
- 전형택, 『19세기초 내시노비의 혁파』, 『한국사론』 4, 서울대 국사학과, 1978.
- 진희택, 『조선후기노비신분연구』, 일조각, 1989.
- 진희택, 『조선후기 고문서에 나타난 仰役奴婢의 성격』, 『전남사학』 17, 전남사학회, 2001.
- 정석중, 『조선후기사회변동연구』, 일조각, 1983.
- 정진영, 『조선후기 호적자료의 노비기재와 그 존재 양상:대구 경주 최씨가 소장 호적자료의 분석』, 『고문서연구』 25, 한국고문서학회, 2004.
- 鄭鉉在, 『丙午式年(1606년) 丹城戶籍에 대한 기초적 검토』, 『慶尙史學』 9, 1993.
- _____, 『山陰縣 戶籍大帳에 대한 一研究 : 丙午式年 戶籍의 수정과 보완』, 『慶尙史學』 14, 慶尙大, 1998.
- 平木 實, 『조선후기노비제연구』, 지식산업사, 1989.
- 韓榮國, 『府의 戶口와 그 構成分布』, 『大丘市史』 第1卷, 1973.
- _____, 『조선중엽의 노비결혼양태(상·하) -1609년의 蔚山府 戶籍에 나타난 事例를 中心으로-』, 『歷史學報』 75·76·77, 1977~1978.

_____, 『‘豆毛岳’考』, 『韓洵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1.

_____, 『朝鮮王朝 戶籍의 基礎的 研究』, 『韓國史學』 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5.

_____, 『조선왕조 호적대장의 탐구』, 『한국사시민강좌』 24, 일조각, 1999.

호적대장 연구팀, 『단성현호적대장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The Existence Aspects of Gongnobi in Jeju in the latter half of the 18th century

—A case study of Hojeokjungcho in Daejeonghyeon—

Kim, Dong-jun
(Che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considers the existence aspects of Gongnobi—the slaves who were held to work for government through Hojeokjungcho of four villages(Dongseongli, Jungmunli, Jadanli, and Geomunli) in Dawjeonhyeon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There existed about 45% Gongnobi in four villages of the above statements in the latter half of the 18th century. The form of Hojeok(family registration) required the name which they were attached to, and the maternal line for reveal their history. In addition, it should include Bongwan(the family origin) for Hogu(houses and inhabitants) of Gongnobi. Also, their name was registered discriminately. That is , the full name was written for male and only first name without family name for female.

There were usually two to four members in Gongnobi's family. The average was just four. That meant below the average of 5.8% of other common families.

The marriage of male and female assumed similar aspects. For male servants, the marriage between servants with the same social levels accounted for 83.9% and the cases between servants and the commoners(Yangin) were 16.1%. For female servants, the former was 84.9% and the latter 15.1%.

Myeoncheonjongyang – the change of social position from slave to Yangin – was through Daegumeoncheon buying social position and Shincheonyeokyang playing a role of Yangin temporarily and free from slave in the end. Yet, all of Gongnobi in Jeju became Yangin by the abolition of Gongnobi in the first year of Sunjo's reign(1801).

To sum up, Gongnobi in Jeju held very low social position but, in the first year of Sunjo's reign, their social status was raised equivalent to Yangin.

[Key words] Gongnobi, Daejeonghyeon, Hojeokjungcho, Dongseongli, Jungmunli, Jadanli, Geomunloli, marriage



투고일 : 2007년 6월 4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6월 27일